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6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정희용 · 고동진 · 박준태
박충권 · 주호영 · 진중오
배준영 · 이인선 · 이달희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 104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부과세)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	------------------------